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7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 강훈식·조 국·허 영

문진석 • 윤준병 • 박희승

김남근 · 김한규 · 김성회

이훈기 · 강준현 · 신영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위한 전자투표 실시를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함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3), 적어도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의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4 신설).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3 중 "會社를"을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로 한다.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특례) 상장회사는 제368조의4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2조의1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			
라 <u>會社를</u> 위하여 그 職務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542조의1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특례) 상장회사		
	는 제368조의4제2항부터 제6항		
	까지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		
	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		
	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